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

06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/ 전화(02)559-5618 / 전송(02)568-7456 / www.gapck.org

문서번호 본부 제104-426호

시행일자 주후 2020. 2. 19.

(경유)

수신 노회장
참조 서기

접수	선결		지시
	일자	시간	
번호	결재		·
처리 과	공급		
담당자			

제 목 총회 충대 천서 관련 사항 통지 건

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노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총회 충대 선출과 관련한 현법과 총회 결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각 노회는 차기 충대 선출 시 아래의 현법 및 총회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현법사항

(1)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. 21당회로 구성된 노회는 총회총대를 목사 3인, 장로 3인씩 파송하여 7개 당회가 추가될 때마다 목사 1인, 장로 1인을 더 파송할 수 있다. 단 추가된 당회 수가 7개에 부족할 경우, 4개 당회 이상이면 목사·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. 단, 21당회 미만은 적용 불가 - 정치 제10장 제2조, 제12장 제2조

(2) 시무기간(최고2년)이 초파된 조직교회 시무목사, 매 3년마다 노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, 전도목사, 무임목사들이 가부권, 결의권,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. - 정치 제4장 제4조 2,5,6항, 제15장 제12조
※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의 전(임시당회장 적격 문제)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(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). - 제102회 총회

(3) 차접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.(총대교체 시 부총대 차접순(순위별)으로 하되, 후순위 자로 변경 시 선순위자의 충대포기각서 필수) - 정치 제12장 제2조

2. 총회규칙 사항

(1) 총회 조직

본 회는 현법 정치 제12장제2조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하며, 총회총대는 조직교 회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이어야 하고, 현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. - 총회규칙 제1장 제3조

(2) 부정금원거래자

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, 상비부, 위원회, 총회 소속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. -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호

(3) 총회 결의 불이행자

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충 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. 단,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. -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

(4) 이중적 및 겸임 금지

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,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~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,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(총회총대로 선출된 날로부터)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(경직할 수 없다). - 총회규칙 제9장 제33조
- 제30조(목사의 이중직 금지)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,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(공무원, 사업체대표, 전임교원, 정규직직원 등)을 가지 수 없다.
- 제31조(이중직 예외사항)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직 금지 규정에 예외로 한다.

1.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교수 혹은 강의자(석좌교수, 강의전담교수, 산학협약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) 중에서 비상근, 비보직이거나, 전임교원이라도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
2.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
3. 생계, 자비랑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
4. 지교회 부설 기관(유치원, 어린이집, 복지시설 등)의 장
5.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

3. 총회 결의사항

(1) 미조직교회 목사(시무목사)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(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)대로 하기로 하다. - 제87회, 제97회, 제103회 총회

(2) 현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'노회가 투표 선거하여'는 무기명 비밀 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(투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) 하기로 하다. - 제99회 총회

(3)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의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(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). - 제102회 총회

(4)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에 보내고 이 결의를 위반할 때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한다(단, 무지역노회 제외, 분립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). - 제79회 총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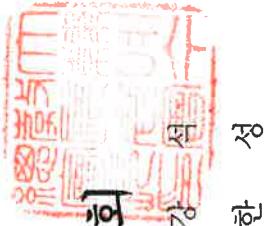
(5)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읍서버로 참석토록 하다. - 제105회 총회

(6) 총회를 상대로 소송(총회결의, 총회 선출직 선거, 전현직 총회임원 직위·직무, 총회재판국 판결, 노회·교회·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, 총회직원 직무 등)에 대하여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되, 해당 노회가 권징조례에 따른 징계 조치를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불이행할 경우 해당 노회의 총대권도 정지된다. - 제101회, 제104회 총회

(7) 총회 시 각 노회별로 좌석을 과반 이상 이탈할 경우와 총회 기간 중 총대 과반수 미만 참석한 노회는 차기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하다(총회결의 정족수 미달 방지). - 제97회 총회

(8) 총회총대가 아닌,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,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하다. - 제98회, 제104회 총회

- (9) 세례교인현금 100% 미실시교회 소속 목사, 장로는 충대권을 제한하기로 한다. - 제86회 총회
- (10) 세례교인현금 노회별 목표금액 50% 미달 시 노회 충대권을 제한하기로 하다. - 제95회 총회
- (11) 만 70세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한 93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. - 제96회 총회
※ 제106회 총대가능연령 1950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
- (12) 노회 내 불란 발생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사고 노회로 판정 시 원칙적으로 해당 노회의 총대는 천서 불가하되, 총회개회일로부터 14일 전(2021년 8월 30일)까지 합의에 이르면 천서하기로 하다.
- (13) 총대변경은 총회개회일로부터 14일 전(2021년 8월 30일)까지로 제한하기로 하다.
- (14) 천서검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문서(탄원서 등) 중 이전에 다룬 적이 없는 새로운 안건의 경우, 2021년 8월 13일(금)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취급하지 않기로 하다.

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

총회장소
장관
천서검사위원장 김한성